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4. 12

제 출 자 : 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
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체납된 사용료 가산금 “ 100분의 5”를 “ 100분의 3”으로 하향
- 나. 원인자부담금 증가산금 대상금액 “ 100천원”을 “ 300천원”으로 상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30조

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①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
조례로 정한다.

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
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자에
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2항 제3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단, 신고량은 3년마다 재조사하여야 한다.

제18조 제1항 중 체납된 금액의 “100분의5”를 “100분의3”으로 한다.

제18조 제2항 중 “금액이 10만원”를 “금액이 3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적용례) 이 조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포 후 최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하수배출량의 인정)① (생략) ②생략 3.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.	제11조(하수배출량의 인정)① (생략) ②생략 3.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, <u>단 신고량은 3년마다 재조사하여야 한다.</u>
제18조(가산금)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<u>100분의5</u>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 할 수 없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<u>10만원</u>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	제18조(가산금)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<u>100분의3</u>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 할 수 없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<u>30만원</u>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